

企業休止 保險一般

〈損害査定을 中心으로〉

吳 海 松

〈本協會 業務部・代理〉

I. 개 요

社會가 복잡해지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生產의 기술과 규모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비대하여 점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위험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서 이에 대처하려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며 재난에 대한 사후보장적기능을 하고 있는 보험제도 역시 꾸준히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화재나 해상위험 등 극히 부분적인 위험만이 담보의 대상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Cosequential Loss를 담보하는 보험이 널리 보급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이 보험의 대표적인 기업휴지보험에 대하여 그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Cosequential Loss Insurance

災害에 따른 物質的 손실은 어떤 損害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가 많은데 이런경우 대부분은 보통보험 약관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하여 열기구나 냉난방설비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상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또는 화재로 인하여 점포, 공장등이 休業함으로써 생기는 손

해는 화재보험에서는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Cosequential Loss Insurance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간접손해(Indirect Loss)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간접손해란 함은 담보위험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화재현장에서 도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난사고 그 자체가 화재의 원인적인 결과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선박이 海難으로 능력이 저하된 결과 傘船者가 용선계약상의 선택권을行使하여 용선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船主가 용선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의 손해는 용선의 해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행사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이지만 만일 해난에 의한 선박의 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용선자의 자유의지의 개입 없이 용선계약이 해지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해상고유의 위험이 직접손해가 된다.

이상 설명한 것이 간접손해의 본래의 의미이지만 이것에 대해 어떤 위험이 부보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피보험의 익에 생기게 한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의 간접손해는 Cosequential Loss라고 한다.

이러한 Cosequential Loss를 담보하는 보험은 현재 그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이것을 대별하면 수익상실(Loss of Earning)을 담보하는 보험과 특별비용(Extra Expense)을 담보하는 보험, 두가지가 있다.

2. 企業休止保險

위에서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중에서도 기업휴지보험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손해보험은 어떤 시점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인 財物이 事故로 인하여 가치의 감소, 또는 상실을 가져올 때 감소 또는 상실된 재물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한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재산의 손해, 즉 물적 손해뿐만이 아니고 企業이 휴업하거나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이익의 감소, 고정비의 계속적인 지출등 二重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기업의 유지상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경상비와 기업이 계속 가동하였더라면 생길 수 있었을 영업 이익등을 손해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기업휴지보험이라고 한다. 여기서 영업이익이란 영업비용에 의하여 생성되며 영업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바, 하나는 영업수익의 감소에 비례하여 그 지출이 감소되는 변동비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수익의 감소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출되는 고정비이다. 이 보험의 대상인 경상비란 회계상의 고정비로서 휴업기간중에도 계속하여 지출되는 고정비이며 보험금액은 영업이익과 이러한 계속경상비의 합계액이 된다. 예전대 은행예금이자, 소유주식의 배당금, 고정자산매각비등은 제조나 서비스라는 조업과는 관계가 없는 수익으로서 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처리되나 경제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과 똑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게 되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없는 적자기업의 경우에도 경상비만은 충족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보험은 영업이 순조로울 때 뿐만 아니라 영업이 역조현상에 있을 때에도 부보할 필요는 물론이고 그 실익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상비의 비중이 기업의 이익보다 더 클때도 있을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재산손해는 대수롭지 않으나 기업휴지 손해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불되는 예는 허다하다.

II. 보험계약일반

1. 보험금액(Sum Insured)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책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보험금액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금액이기 때문이다. 기업휴지보험에서 보험금액 산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하나는 Loss of Profits 방식이며 또 하나는 Gross Earnings 방식이다. 그러면 Loss of Profits 방식과 Gross Earnings 방식의 보험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Loss of Profits 방식

Loss of Profits Insurance의 부보대상은 Gross Profits이며 Gross Profits 즉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가. 加算方式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체결시 부보목록에 영업이익(Business Profit)과 경상비(Standing Charges)를 열거하는 방법이며 피보험자가 영업이익과 경상비를 선택하여 부보항목 및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상비의 의미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휴지기간동안 계속지불되는 비용과 지불되지 않는 비용의 구별이 어려워 보험금액 책정이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全經營費方式 : 보험계약체결후에 새로운 항목의 경상비가 생긴다거나 항목의 변경 또는 분할이 생긴 경우에 부보경상비명세표를 정정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Gross Profits의 정의를 영업이익 및 全經營費로 규정한 것으로서 개개의 명세금액의 합계액의 5%를 한도로한 금액을 잡경상비명목으로 부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는 가산방식에 있어서의 경상비명세 대신에 다만 전경상비를 기재하면 되므로 표현이 간단하고 특별한 비용에 대한 부보경상비안분계산이 불필요한 점등의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산방식과 마찬가지로 회계기록으로부터 영업이익과 경상비를 발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 差額方式 : 총매출액에서 유동비를 공제한 잔액이 곧 경상비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계약이 이 방법으로 체결되고 있다. 이것은 경상비항목보다도 유동비항목이 그 수도 적고 산출하기도 쉬우므로 보험금액결정이 용이하여 실무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에서의 Gross Profits는 매출액과 年末商品在庫價額의 합계액으로서 年初商品在庫價額과 매입

가액 및 비부보영업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유통비(Variable Charges)는 원료구입비 등과 같이 기업이 中止되면 지출이 中止되는 비용이고 고정비(Standing Charges)는 기업이 중지되어도 계속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며 이 두가지를 합한 것을 경상비라 하고 통상 기업휴지보험에서는 이 계속비를 경상비라 한다.

(2) Gross Earnings 方式

Gross Earnings Form에서의 보험금액산출은 대상위험에 따라 제조위험, 상행위험 및 Earning Form 등 세가지 방법으로 구별하게 된다.

가. 제조위험(Manufacturing & Mining Risks) : 기업의 영업으로 발생한 총정미생산품판매액과 기업경영에 따른 기타 수익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부자료가액 그리고 판매비등을 차감한 금액을 Gross Earnings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보험금액은 Annual Gross Earnings에 共同保險率(Coinsurance Rate)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商行爲危險(Merchantile & Non-Manufacturing Risks) : 상행위험방식에서의 Gross Earnings 기준은 판매이며 보험금액산출방식은 제조위험에서와 마찬가지로 Annual Gross Earnings에 공동보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Earnings Form : 이 방식은 非製造業體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동보험조항이 없고 보상기준은 보험기간의 일정비율에 의하고 있으며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2. 補償期間(Indemnity Period)

企業休止保險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보험기간과는 별도로 보상기간을 약정하게 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을 정상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필요한 기간을 피보험자는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보상기간은 손해를 당한 재산의 복구와 기업경영의 수익을 복구하는 양면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하게 된다. Loss of Profits 방식에서 보험금액은 Annual Gross Profits 전액이며 보상기간이 12個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도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증액된다. 그리고 보상기간이 만일 6개월인 경우에는 증

권상에 기제된 12개월 해당의 Gross Profits중 半額만을 補償받는 것이 보통이다.

3. 共同保險(Coinsurance Clause)

공동보험조항의 의미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서 약정된 공동보험율에 따라서 付保率을 계산하여 事故時 부보율이 공동보험율이상으로 유지되면 실손해액을 보상하게되나 해당공동보험율미만으로 부보율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부보율 만큼은 비례로 보상하게 된다.

Gross Earnings 방식에서는 “보상기간”을 정하여 이재발생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을 적용하여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동보험율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복구에 소요될 기간을 추정하여 12개월에 대한 비율로 결정하게 되며 보험금액은 결정된 공동보험율을 Annual Gross Earnings에 승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까지는 보상받게 되며 공동보험율이 50%인 경우에는 12개월의 50%인 6개월 정도가 경과되면 보험금액에 거의 도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Loss of Profits 방식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지 않고 계약상 특정된 기간까지 만의 손해를 보상하므로 즉 어떠한 경우에도 Gross Profits의 감액을 허용하지 않은채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의하여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료산출의 대상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손해액이 보험금액에 达할때 까지 보상되는 Gross Earnings 방식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特別約款

企業休止保險約款에 첨부할 수 있는 特別約款은 다음과 같다.

(1) Premium Adjustment Clause: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계약만기일에 그 초과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서 비례보상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는 조항이다.

(2) Agreed Amount Endorsement: 일정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 경우에는 공동보험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3) Extended Period of Indemnity Endorsement:企業이 휴지상태에서 회복되어 실질적으로 조업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회복되는 시점간의 공백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이다. 기업 휴지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실질적인 조업의 재개시점까지 뿐이다.

(4) Ordinary Payroll Exclusion Endorsement: 이 특약은 Gross Earnings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일시적 임금에 관한 내용이다. 즉 會社의 임원이나 정규직원 및 기타 중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급료 이외의 급료를 부담보하는 특약이다.

(5) Ordinary Payroll Limited Coverage Endorsement: 이 특약은 복구기간 중 일부기간을 약정하고 그 기간 까지만의 일시적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90일에 限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더이상 그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6) 이외에도 화재보험용의 특약으로서 Mining Property Endorsement, Molten Material Clause, Combined Manufacturing and Merchantile Operations Endorsement, Media for Electronic Data Processing Extension Endorsement, Off Premises Power Clause, Contingent Liability from Operation of Building Laws Endorsement 등이 있다.

III. 企業休止保險의 損害査定

企業休止保險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해당계산보험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 휴지가 발생하는 기본요소인 건물, 기계, 동산등 보험의 목적물이 반드시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 또는 기계보험등의 財物보험등에 부보되어 있고 담보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어야만 휴지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보험금액 산출방법상 LOP 방식과 GE 방식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 바와 같이 손해사정에 있어서도 두가지 방식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LOP방식과 GE방식의 손해 사정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이해를 돋기 위해 손해사정의 실례를 첨가하고자 한다.

1. Loss of Profits 방식의 손해사정

LOP 보험계약의 목적은 담보위험(화재)의 발생으로 파생된 보상기간(Indemnity Period) 중의 Gross Profits(총이윤)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LOP보험의 손해사정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두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의 보상기간동안의 Gross Profits를 산출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의 보상기간중의 Gross Profits를 산출하는 것인데 이 두 경우의 계산상의 차액이 곧 보상의 대상인 손해액(Loss Amount)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보상기간동안의 적정한 Gross Profits를 산출하려는 특별한 방법이 고려되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방법에서는 먼저 보상기간과 똑같은 기간의 비교기간(Comparison Period)을 定하여 회사의 Gross Profits를 계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 전날부터 소급한 기간이어야 하며 만일 보상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따라서 Gross Profits 추정금액도 증가하게 되고 그 기간 역시 사고 발생일 전날부터 12개월을 기준하게 된다. 그래서 기 산출된 비교기간의 Gross Profits는 계속적으로 보상기간중의 판매규모나 가격변동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방식이 실제 보상기간의 Gross Profits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LOP 보험의 손해사정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Gross Profits를 도출해 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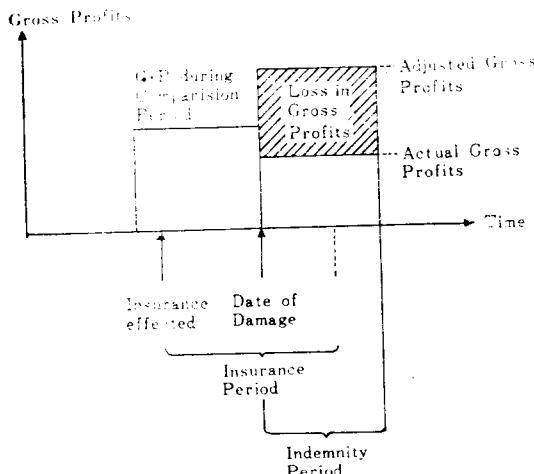
(1) 비교기간(Comparison Period)의 Gross Profits

(2) 이재가 발생하지 않은 보상기간의 Adjusted Gross Profits

(3) 이재발생한 후의 보상기간 동안의 Actual Gross Profits

여기서 Adjusted Gross Profits의 개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기간 중에 일어될 정상적인 Gross Profits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의 계산은 비교기간(Comparison Period)의 Gross Profits를 보상기간(In-

demnity Period)의 상황과 비교하여 관련없는 항목은 무시하고 추가되는 항목은 증(Addition)하여 산출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이해를 돋기 위해 이상의 내용을 도해로 표시하여 보기로 한다.



LOP보험에서 손해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급적 Gross Profits를 변동시키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데 있다. 그러나 Gross Profits의 어떤 항목들은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변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손해사정을 할 때는 항상 이런점에 유의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손해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치를 적용하여 간단한 손해사정의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예>

- 1) Gross profit during the comparison period \$ 5,000,000
- 2) Adjusted gross profit during the indemnity period, had the fire not occurred \$ 6,000,000
- 3) Actual gross profit during the indemnity period \$ 4,500,000
- 4) Decrease in gross profit(point 2 less point 3) \$ 1,500,000
- 5) Deduction: savings in accordance with separate specification \$ 200,000
- 6) Addition: extra expenses in accordance with separate specification \$ 300,000
- 7) Miscellaneous adjustments.....0--

8) Loss(Sum Insured \$ 7,000,000) \$ 1,600,000
 9) Indemnity \$ 1,600,000
 이상의 보험금산정 내용에서 본바와 같이 GP가 보험금액보다 적기때문에 일부보험이 아니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보상 기간중의 GP가 \$ 6,000,000인데 이제가 발생한 보상기간중의 GP가 \$ 4,500,000로 감소되었으므로 화재발생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GP가 \$ 1,500,000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위의 GP 감소액에 증감하여야 할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GP 내용중에서 피보험자에게 추가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차감하고 이재발생과 더불어 특별히 생긴 비용(Extra Expense)은 손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특별비용은 기업휴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필연적인 비용으로써 Gross Profits를 계산할 때에는 제외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2. GE 방식의 손해사정

Gross Earning Form에서 보험자는 12개월간의 예상 총수익(Gross Earning)에서 기업휴지기간동안에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Gross Earning의 의미는 正味收益(Net Profit)과 계속비(Standing Charges)를 합한 것이다. 손해액은 사고 발생후부터 정상적인 상황 즉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수익으로 계상되었을 총수익을 뜻한다. Gross Earning Form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필요기간동안의 총수익의 감소액과 경상비 및 필요비를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기간의 종료와 상관없이 보상하나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에 의해 위에서 말한 총수익을 손해액으로 하여 이 손해액을 필요금액(Required Amount)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여기서 필요금액이라함은 前記총수익에 공동보험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금액이 필요금액을 충족했을 경우와 보험금액이 필요금액에 미달했을 경우, 그리고 보험금액이 필요 금액을 충족하고 全損(Total Loss)이나 또는 손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세가지 경우의 보험금산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甲會社에서 예상하는 1년간의 총수익이 10억 원이라고 추정하

고 80%의 공동보험율(Coinsurance Rate)을 약정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은 8억이 된다. 앞의 계약일반에서 설명한바 있듯이 보험금액은 총수익에 공동보험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다.

이제가 발생한후 산출된 총수익도 역시 10억이라고 할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전액보험으로써 Full cover를 받을 수 있게되나, 보험금액이 필요 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비례(Average)로 계산하여 보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1) 보험금액과 필요금액이 동일한 경우

$$1\text{억 (L.A)} \times \frac{8\text{억 (I.A)}}{10\text{억} \times 80\% (\text{R.A})} = 1\text{억 (P.A)}$$

(2) 보험금액이 필요금액 미만인 경우

$$1\text{억} \times \frac{8\text{억}}{12\text{억} \times 80\%} = 83,333,340$$

(3) 보험금액이 필요금액을 초과하고 全損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10\text{억} \times \frac{8\text{억}}{10\text{억} \times 80\%} = 10\text{억}$$

但 이 경우에는 보험금액 8억 한도로 보상하게 된다

3. 맷는말

企業休止保險의 損害查定은 다른 어떤 財物保險의 損害查定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Adjuster는 충분한 會計學知識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企業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

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企業의 모든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會計監査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企業休止保險에서 補償되는 항목과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의 기본이 되는 항목은 賃金, 貸借費用, 利子, 稅金, 廣告宣傳費, 特許權, 통신비, 출장비, 보험료, 割引費, 판매수수료, 동력비, 관리비, 임가상각비, 연구개발비, 포장비 등이 있다. 또한 하청가공비 등도 빠뜨려서는 안될 항목중의 하나이다. *

첨언 : 주어진 지면관계로 더욱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 ☆ General Insurance Condition(Multiperil Business Insurance) published by SKANDIA Insurance Company
- ☆ Loss of Profits Insurance published by SKANDIA Insurance Company
- ☆ Insurance Principles and Practices written by Robert Riegel, Jerome S. Miller, C. Arthur Williams, JR.(University of Minnesota)
- ☆ Property Insurance Underwriting and Claims published by The CII Tuition Service
- ☆ Home, Business Protection Policy published by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orea)